

의안번호	2219512
의 퇴 인	이광희 의원
회 답 일	2026. 7. 3.
추 계 번호	26F3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손금산입 대상 특례기부금 기관으로 추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 추가 - 손금산입한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범위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을 추가함에 따라,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산입되어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안 제24조제2항)
 - 손금산입한도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이며, 법인은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최근 5년('20~'24) 법인의 특례기부금 신고금액은 연평균 1조 1,939억 원 수준임
 - 1법인당 특례기부금 신고금액은 연평균 124만원

[표 1] 특례기부금 신고금액 추이

귀속연도	신고법인수 (만개)	특례기부금 (억원)	1법인당 특례기부금 (만원)
2020	84	10,668	127
2021	91	12,991	143
2022	98	10,988	112
2023	103	12,257	119
2024	106	12,793	121
연평균('20~'24)	96	11,939	124

□ 현행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대상기관 중 병원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국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개정안: **국립소방병원** 추가)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 (공공기관 등)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운영하는 병원
-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향후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고,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의 과세정보와 결합해야 하나, 관련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국립소방병원은 2026년 6월 정식 개원하여 기부금 관련 실적이 아직 축적되지 않았음
 -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다른 병원은 국립소방병원과 설립 목적 및 운영 여건 등이 상이하여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